

#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8호
의결 년월일	2006. 9. 15 (제130회)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부천시의회는 연간 회의총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의총일수는 48일 이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7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1일로 함(안 제4조)
- 라.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42일 이내로 한다.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48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

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은 새로 구성되는 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④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